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성흠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8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1일
발 의 자 : 성흠제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제리, 김태수, 김평남,
김희걸, 박기열, 박기재,
박상구, 박순규, 송명화,
송아량, 양민규, 이영실,
임종국, 장상기, 전석기,
최 선, 최웅식, 황규복
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5조(우대)에 근거하여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제9조(사용료의 감면)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는 취지와 활성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, 병역명문가 단체 경기 및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단체 경기 및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토록 함. (안 제9조제1항 제3호라목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병역법」,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3호 중 라목과 마목의 목 번호를 각각 마목과 바목으로 하고,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단체 경기 및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사용료의 감면) ① 학교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100분의 50 감면</p> <p>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</p> <p>나.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</p> <p>다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>라.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노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</p> <p>마. 해당 학교의 동창회 및 학교 규정에 따라 구성된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9조(사용료의 감면)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-----</p> <p>가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나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다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라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단체 경기 및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</u></p> <p><u>마.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바.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

문서번호

2021032900000018

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성흠제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정수 팀장
원동아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03.29.

회신일 : 2021.03.29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1항제3호 라목 신설에 따라 재정 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에 대한 병역명문가의 단체 경기 및 행사 이용실적 파악이 어려워 비용추계 곤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-안 제9조제1항제3호 라목을 신설함에 따라, 사용료의 감면대상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포함(100분의 50할인)함으로서, 세입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병역명문가의 단체 경기 및 행사 이용실적 자료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
※우리나라 전체 병역명문가는 1,017가문, 5,222명(병무청 자료 2020년 기준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분석관(주무관) 원동아

☎ 02-2180-7953

e-mail : dongya1@seoul.go.kr